대법원 2023도179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만 9개월)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 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1회 위반 부분 제외)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8년)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797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 2008. 12.경부터 화성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 피해아동 A(9개월, 베트남 국적), B(10개월), C(2세, 태국 국적):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피해아동 A에 대한 범행
  - 2022. 11. 3.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피해아동을 바닥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혔는데 피해아동이 고개를 들며 잠들지 않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

리와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눌러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 2022. 11. 4.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 2022. 11. 8.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피해아동이 밥을 바로 받아먹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몸통을 1회 밀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 피고인은 2022. 11. 10. 11:21경부터 12: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잔 피해아동 A(9개월)가 같은 날 12:20경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기어 나오자마자 피해아동을 다시 들어 바닥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피해아동의 전신을 완전히 덮고 그 위에 쿠션을 올리고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12:25경까지 약 5분 동안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함.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발버둥 치며 움직이자, 피고인은 12:25경부터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피해아동의 몸 위에 엎드려 상반신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눌렀고, 방금 충분히 자고 일어난 피해아동이 바로 다시 잠이 들 리 없고 생후 9개월 영아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그 위에서 성인이 상반신으로 누른다면 아동이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약 7분 동안 그 자세로 피해아동을 압박하여 피해아동이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함. 그 후에도 피고인은 약 7분 동안 더 같은 자세로 피해아동을 누르다가 내려옴. 피고인은 15:37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불이 덮인 상태로 의식 없이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아동이 압착성 질식 및 코, 입 막힘 질식이 결합한 형태의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

2. 소송경과

▣ 제1심: 유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이유 무죄[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 징역 19년,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10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은 이유 무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에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

▣ 원심: 일부 유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일부 무죄[1회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징역 18년,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10년
  - 파기사유: 1회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 무죄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함
-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살인의 고의 유무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 양형부당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 상고이유 부분(무죄 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에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 A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위반 1회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상고이유 부분(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